

전첨공파종중 정상화를 위한 종원연대 회칙

【전 문】

전첨공파종중 정상화를 위한 종원연대(이하 "종원연대"라 한다)는 전첨공파종중(이하 "종중"이라 한다)의 장기간에 걸친 법적분쟁으로 인한 종중의 피해와 종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, 종원의 의사를 규합하여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종중의 조속한 정상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.

제1조 (사명)

다음 각 호를 사명으로 한다.

- (1) 종중 운영에 종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한다.
- (2) 남녀종원의 차별을 폐지한다.

제2조 (기본 원칙)

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.

- (1) 익명성의 원칙
 - 종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, 대외활동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합니다)을 제외한 회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(2) 독립성의 원칙
 - 특정 종원 또는 종중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며, 후원금·성금 등 일체의 금전 거래를 금지한다.
- (3) 투명성의 원칙
 - 모든 대외활동은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(4) 민주성의 원칙
 - 모든 의사결정은 회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하며,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.

제3조 (회원)

- ① 종중의 종원으로서 본 회칙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



② 회원 가입은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 및 동참 의사를 종원연대 및 위원 또는 회원에게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되, 회원가입 및 탈퇴의 근거를 영구보존한다.

제4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- (1) 자유로운 의사 개진권
- (2) 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
- (3) 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

제5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- (1) 회칙 및 종원연대의 목적을 준수할 의무
- (2)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협력 의무
- (3) 종중 및 종중 임원과 종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을 의무
- (4) 종원연대 회원의 익명성을 보장할 의무
- (5) 종원간의 상호존중 및 예의를 지킬 의무

제6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즉시 탈퇴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총회 의결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- (1) 종원연대의 목적과 사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(2) 종원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- (3)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
제7조 (활동 원칙)

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- (1) 감시
 - 종중 정상화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종원에게 알린다.
- (2) 대안 제시
 - 합리적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종중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다.



(3) 참여 촉진

- 종원연대 회원가입과 종종 행사 및 향사 참여를 장려한다.

(4) 연대 강화

- 종원 간 협력을 도모하고, 권리 침해를 받는 종원을 보호한다.

제7조의2 (종원의사 수렴 및 확정)

종원연대는 종원의 의사를 규합하여 종종 운영 및 종종 정상화에 반영함을 목표로 하며, 회원의 의사를 객관적·체계적으로 규합하여, 종종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.

① 종원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- (1) 전자적 설문
- (2) 서면 동의서 및 서명
- (3)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표
- (4) 기타

②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의견을 "종원의사"로 확정할 수 있다.

- (1)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
- (2) 총회 의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항에 한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

③ 확정된 종원의사는 종원연대의 공식 입장으로 공표할 수 있다.

제7조의3 (종원의사 공표 및 대외행사)

① 확정된 종원의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.

- (1) 종종 임원 및 직무대행자에 대한 전달
- (2) 종원 및 종종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달
- (3) 언론 및 대외 공개

② 종원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,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- (1) 각종 의견서 및 성명서 작성 및 제출
- (2) 법적 대응 지원
- (3) 영상 등 제작 및 배포
- (5) 종종 이해관계자 등 기타 필요로 되는 단체 및 개인과의 면담

제7조의4 (대표성 확보)



총원의 실질적 의사를 종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회원명부 및 의사수렴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·보존한다.

제8조 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종원연대는 별도의 대표를 두지 아니하며, 모든 회원은 평등하다.
-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 - 종무위원
 - 법무위원
 - 운영위원
 - 기타위원
- ③ 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④ 위원은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원칙으로 활동한다.
- ⑤ 위원 3인 이상으로 위원회의를 구성하며, 소집 및 의결은 총회 의결에 준한다.

제9조 (위원의 임기 및 직무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각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종무위원 : 종종 관련 현안 분석 및 관련 업무 수행
 - 법무위원 : 종종 관련 법률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
 - 운영위원 : 종종 운영 감시 및 종원연대 운영 관리
- ③ 각 위원은 후임 위원 선출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0조 (총회)

-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.
-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 - (1) 위원회의 결정
 - (2) 회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의에 소집을 요청한 경우
 - (3)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첫번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며, 현장총회와 비대면 총회를 겸한다.
- ③ 총회는 개최 48시간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안건 제안설명서와 함께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가 발송된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④ 출석 회원으로 성원하고,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

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.

제10조의2 (긴급 의사결정 : 위원회의)

① 다음 각 호의 경우, 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한 위원회의는 만장일치의 의결로 긴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.

- (1) 총회의 위임을 받은 안건
- (2) 중중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안건
- (3) 종원연대 운영을 위한 안건

② 긴급 의사결정은 차회 총회에서 반드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종원연대의견에 한하여는 긴급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,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0조의3 (전자회의 및 비대면 의결)

- 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의 및 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전자적 의결은 서면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11조 (해산)

종원연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할 수 있다.

- (1)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
- (2)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
- (3)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

제12조 (보칙)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의결에 따르되, 총회가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 (시행일)

본 회칙은 2026년 4월 30일 창립총회에 참여한 창립종원이 창립총회회칙에 서명한 20시 12분부터 시행하며, 창립총회 사진 및 회의록(녹음파일 또는 녹화파일 포함), 참석자명부, 창립총회회칙을 영구보존한다.

전첨공파종중 정상화를 위한 종원연대

